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 직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재직한 별정우체국직원(국장포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관행 개선(안 5조)

-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채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같음 가능)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안 제30조제2항)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 확대(별표6)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라.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 임신기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마.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30조제14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특별휴가 부여

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30조제15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 대해 배우자의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사. 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의5,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에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 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하고, 병가·공가 조항 및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통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수 있다)

제11조의5제4항 중 “40분”을 “50”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9조 및 제11조”를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0일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를 “60일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를 “그 국장 또는”으로, “다른”을 “다른 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소속 국장 또는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제30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 단서 중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별표 6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20”으로, 같은 란 중 “15일”을 “2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출산에 다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 경조사휴가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제4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30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비서류) ① 신규 임용되는 국장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의 사본 제출로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통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략)	제11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	④ ----- ----- -----

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분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생략)

제19조(근무시간 등) 국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8조(병가) ①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7조의

— — — — 50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근무시간 등) -----

----- 제9
조부터 제11조까지-----.

제28조(병가) 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소속 -----
----- 60일의 범
위에서 -----.

경우

6제6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설>

② (생략)

제29조(공가) 국장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국장의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그 국장 또는 -----
-- 다른 국장 또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소속 국장 또는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9조(공가) -----

-----.

1. ~ 8. (현행과 같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제30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예방접종 또는 임신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30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⑥ ~ ⑬ (생략)

<신 설>

----- . 이 경우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⑤ -----

---. <후단 삭제>

⑥ ~ ⑬ (현행과 같음)

⑭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

<신 설>

<신 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 설>

<신 설>

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7일

⑮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

-----.

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u><신 설></u>	3. <u>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u><신 설></u>	4. <u>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